

전 자 장 치 부 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 신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 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 신설)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
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